



보도시점

2026. 3. 22.(일) 11:00
3. 23.(월) 조간

배포

2026. 3. 20.(금) 16:00

농식품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 수립

- (비전)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존중받는 여성농업인의 위상 확립
- (전환) ①형식적 참여 ⇨ 실질적 지위, ②개별사업 중심 ⇨ 거버넌스 구축, ③보호·복지 중심 ⇨ 경제주체 성장 지원, ④돌봄·건강 공백해소 맞춤형 지원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전문인력화를 통해 건강한 농촌 가정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기반 확대, 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제6차 기본계획은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존중받는 여성농업인 위상 확립’을 비전으로,

▲형식적 참여 확대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으로 ▲개별 사업 중심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축으로 ▲보호·복지 중심 지원에서 핵심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으로 ▲돌봄·건강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맞춤형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①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 및 성평등 농촌 실현 ②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 ③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여성 성장 지원 ④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확대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①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신장하고 성평등한 농촌을 실현한다.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도입 검토 등 지속적 제도개선과 함께 농협 이사회 성별 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지역 농협 여성 이사 비율을 확대한다. 또한, 여성친화농촌 모델 검토, 마을이장 선출 방식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성평등 농촌 조성을 도모한다.

아울러 농촌지역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농촌 특화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 참여자와 농업 분야 고용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 둘째,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농촌여성정책과 신설(2025.12.30.)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 시행 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민간이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정책협의체를 신설하여 정례적으로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능도 강화하여 여성농업인 정책 정보제공, 챗봇 상담, 커뮤니티 게시판 등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법령과 사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고,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 표본 확대와 조사항목 개선, 조사주기 단축 등을 통해 정책 통계 기반도 강화한다.

③ 셋째, 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여성의 성장을 지원한다.

농업·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탄력적 일자리 발굴·확산과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여성친화형 농기계와 장비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웨어러블 근력보조 장비 등 농작업 노동부담 완화를 통한 영농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20~'24) 27종 개발, 25종 약 14천대 보급 → ('26~'30) 25종 추가 개발 목표(농진청)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마케팅 및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교육도 연계·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진로탐색교육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통합 홈커밍데이’를 추진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광범위한 교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4 넷째, 농촌 여성의 복지와 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농번기 새벽·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틈새돌봄’을 도입하고 돌봄·급식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 평가 측정지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하여 검진 연령을 상향(만 51세~만70세 → 만 51세~만80세)하고 지원인원(5만명 → 8만명)을 대폭 확대하며, 농업e지 연계를 통해 검진 편의를 제고한다. 온열질환 예방 관리와 화장실 등 농작업 현장 위생·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에게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윤원섭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 2.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주요내용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농촌여성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수아 (044-201-1791)
		담당자	사무관	황서연 (044-201-1792)

비전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존중받는 여성농업인의 위상 확립**

**달성
목표**

- ◇ 여성농업인이 동등한 지위와 기회를 누리는 농촌 문화 조성
- ◇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주체성 확보와 지역사회 기여도 확대
- ◇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지원 확대

전략 및 과제

4대 전략	11대 정책과제
1.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 및 성평등 농촌 실현	① 농촌 여성의 대표성 강화 ② 농촌형 성평등 모델 마련 및 문화 확산
2.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	① 지방정부 정책 추진체계 강화 ② 여성농업인 정책 싱크탱크 신설 ③ 성인지 정책관리 및 통계체계 개선
3. 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여성 성장 지원	① 농촌 여성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② 여성농업인의 영농·경영 및 지속가능 농업 역량 강화 ③ 농촌 미래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4. 농촌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건강 지원 확대	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생활 안전망 구축 ② 여성농업인 직업적 질환 예방 및 건강권 보장 ③ 여성에게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

- ◇ (목적)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전문인력화를 지원하여 건강한 농촌 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 발전 도모
- ◇ (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01~)에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

I 제6차 기본계획의 정책 전환 방향

- 형식적 참여 확대 → **실질적 지위 향상**
 - 그간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정책은 참여 기회 확대에 머물러 실질적인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못함
 - 제6차 기본계획은 여성농업인의 단순 참여 확대를 넘어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의 실질적 권한과 지위 향상을 추진
- 정책 추진체계 미흡 → **정책 거버넌스 구축**
 - 그간 농촌 성평등 정책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중앙 - 지방 간 정책 연계·조정 기능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 및 정책 환류 구조가 미흡
 - 제6차 기본계획은 중앙 - 지방 - 민간을 아우르는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강화
- 보호·복지 대상자 → **핵심 경제주체로 전환**
 - 그간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은 복지·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여성의 독립적 소득 기반 확충 및 경제활동 영역 확대의 측면은 미흡
 - 제6차 기본계획은 단순 지원 확대를 넘어 여성농업인을 농업·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 재정립
- 돌봄·건강 공백 → **농촌 맞춤형 지원 강화**
 - 그간 여성농업인 보건·복지 정책은 농번기 등 농촌의 노동·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
 - 제6차 기본계획은 농촌 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 및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

II 제6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 및 성평등 농촌 실현

□ 농촌 여성의 대표성 강화

- 공동경영주 취업 제한 완화, 정의 명문화, 등록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등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 농협 이사회 성별 규정 신설(농협법 개정) 등을 통한 여성이사 비율 확대
- 마을 이장의 성평등한 선출방식(1세대 1표 → 1인 1표) 확산

□ 농촌형 성평등 모델 마련 및 문화 확산

- 여성친화농촌 모델 및 농촌 특화 평가지표* 도입 검토
* (예) 여성 이장 및 마을리더 비율, 여성농업인 정책 참여도, 농촌 특화 취창업 지원 등
- 농촌지역 성평등 수준 진단체계 마련 및 성평등 교육 확대·관리 강화*
* 농식품부 소관 사업 참여자, 농업분야 고용주·근로자 등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및 강사 DB 구축, 강의 모니터링·피드백 시스템 도입 등 강사 사후관리 강화

2.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

□ 지방정부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인력 확보 추진* 및 지방정부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체계 마련
* (예) 농식품사업 선정 시 우대, 정부포상 및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마련

□ 여성농업인 정책 썬크탱크 신설

- 중앙·지방 및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신설·운영(분기 1회), 농촌 여성 관련 정보 종합 플랫폼* 기능 강화
* 여성농업인 생애주기 맞춤형 정보제공, 챗봇 활용 상담, 정책 제안, 모바일 앱 구축 등

□ 성인지 정책관리 및 통계체계 개선

- 법령·사업에 대한 성인지성 검토 및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통계 개선*
* 표본 수(현재 2,500명) 확대, 조사항목 다양화, 조사 주기(현행 5년) 단축 등

3. 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여성 성장 지원

□ 농촌 여성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 농업·돌봄과 병행가능한 일자리 발굴·확산 **지방정부**
* 일본 나기초 일자리 편의점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주민에게 편의점처럼 간편하게 연결(19~)

- 성평등한 경영구조 확산을 위한 **가족경영협약 활성화** 농촌진흥청
 - * 관련 지원사업 연계 및 확산모델 발굴, 지방정부 조례에 관련 조항 신설 권고 등

□ **여성농업인의 영농·경영 및 지속가능 농업 역량 강화**

- **여성친화형 농기계·장비 개발*** 및 보급 확산
 - * ('20~'24) 27종 개발, 25종 약 14천대 보급 → ('26~'30) 25종 추가 개발 목표(농진청)
- 여성농업인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 및 **AI·디지털 전문 교육과정** 신설
 - * 상품기획, 제품생산, 식품위생, 인허가, 유통·판매, 마케팅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5년)
- 여성농업인 **유통·마케팅 및 친환경농업** 실천 역량 강화
 - * 오프라인온라인 직거래 교육,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친환경농법 및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안내

□ **농촌 미래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청년 여성의 **농업·농촌 진입**을 위한 **진로탐색교육 고도화**
 - * 교육 수요자 맞춤형 과정 운영 및 지속적 교류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통합 홈커밍데이 추진
- 귀농·귀촌 여성 대상 **팀프로젝트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 * 청년 여성농업인 컨설팅, 모니터링 및 우수 팀 시상·포상 등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교육, 갈등해소·관계향상 교육 및 농촌 청소년 대상 집합캠프 등

4. 농촌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건강 지원 확대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생활 안전망 구축**

- 새벽·야간 등 보육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의 **'틈새돌봄'** 추진
- 돌봄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확산**
 - * 공동급식 서비스모델 개발·확산, 마을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질환 예방 및 건강권 보장**

-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 **검진편의 제고(농업e지)** 및 **사후관리 강화***
 - * 검진자 DB 구축분석 및 직업성질환 예방관리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서비스 모델 개발(농진청)

□ **여성에게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

- **온열질환 예방관리**,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확대** 등 안전·예방 강화
- 농지 위 **개인용 화장실** 설치 기반 마련(농지법령 개정) 및 그늘 쉼터, 휴식대, 공중화장실 등 **농촌 근로환경 분석·지원사업** 추진 지방정부